

독일의 전기·가스요금 사후적 규제에 관한 법제 연구

장원규

지역법제 연구 14-16-⑩

독일의 전기·가스요금 사후적 규제에 관한 법제 연구

장 원 규

독일의 전기·가스요금 사후적 규제에 관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n *ex post* Regulation of
Electricity & Gas Prices in Germany

연구자 : 장원규(초청연구원)

Jang, Won-kyu

2014. 11. 28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저렴한 또는 적절한 요금의 전기·가스공급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위해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에너지요금 및 비용은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에 속함. 그러나 높은 에너지요금 및 비용은 실질적인 생산손실 또는 소비재에서 지출감소로 나타남. 에너지요금의 가파른 상승을 보면, 특히 전기 및 가스처럼 망으로 엮어져 있는 에너지원은 공공의 이목을 집중시킴
- 본 연구는 독일에서 에너지 자원 및 생성과 관련한 법제와 법적 사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봄
 - 1998년 4월 독일은 경쟁의 적용을 위해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에너지시장 민영화의 중심에 있었음. 그 이후 여러 차례 에너지산업법(EnWG)을 개정하여 구시대적인 독점을 제거하고 세대와 공급에서 경쟁적인 시장을 조성함. 보다 경쟁적인 유럽시장에서 요금의 인하와 산업구조개선을 이끌고 있음. 그리고 강력하고 책임 있는 규제기관을 도입했음
 - 에너지산업법에 근거하여 전기와 가스 영역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망연결, 망사용, 보편적 공급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함. 전기 영역에서는 전기기본공급명령(StromGVV)과 저전압

연결명령(NAV), 가스 영역에서는 가스기본공급명령(GasGVV)과 저압연결명령(NDAV)이 있음

II. 주요내용

- 독일은 에너지산업법의 제규제에 관한 법률과 카르텔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국내 전력시장에 관한 지침 96/92를 수용했음. 다만,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최소한 점진적인 민영화의 시행을 따르지 않고,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이루었음. 에너지법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쟁을 통해 저렴한 전기 및 가스요금에 이르게 하는데 있었음
- 전기·가스요금의 규제 시 에너지산업법과 카르텔법의 관계
 - 독일 에너지 영역에 적용되는 카르텔법은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에너지산업법과 카르텔법은 각각 에너지망에 접속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매우 다른 법적 기반을 두고 있음. 전자는 사전적 규제방식으로, 후자는 사후적 경쟁법으로 작용함. 특히, 망요금규제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산업법은 특별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카르텔법상의 규정들은 에너지산업법상의 규정들이 있는 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공인된 망요금은 최종소비자를 위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한 절차에서 연방카르텔청(BKartA)과 주카르텔청(Landeskartellbehörden)을 구속함
 - 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카르텔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에너지 영역에서 폐해방지를

목적으로 독일의 입법자들은 카르텔법 제29조에서 특히 요금통제를 위한 특별한 규범을 정하였음. 이 조항은 지나친 에너지요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쟁법상의 방법을 더 분명히 해야 함. 이 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7년까지 효력이 있음

□ 석유가격에 기초한 전기·가스요금의 산정이 카르텔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는 논의의 대상임. 특히, 민영화된 전기·가스시장의 변화된 성질을 고려하고, 이러한 요금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써 고려해야 한다면, 이 요금이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됨

○ 독일에서 가스요금은 전통적으로 석유가격과 연결되어 있음. 더욱이 천연가스의 소비자와 수입가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참고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를 가열하기 위한 요금과 관련이 있음. 그러나 경쟁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척도가 되지 못하는 석유가격만으로 요금을 연결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3월 24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석유가격에 가스요금이 연동된 약관상의 계약조항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이 판결은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민사법 규정에 의해 개진하고 있는 약관의 제한에 관한 것임. 그러므로 이는 특별고객에 대한 계약을 다루었음. 판례에 따르면, 당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약관은 모든 가능한 경우에 요금의 잠재적 상승을 고려함이 없이 가스공급자에게 수익의 증대기회를 제공함. 비록 석유가격에 결부된 가스 수입비용이 최종소비자 측면에서 요금형성을 위해 관련 있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연결비용, 마케팅비용, 부담금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도·소매 단계에서 시장집중: 전기·가스의 도·소매시장은 국가적으로 범위와 특색에서 시장집중의 상위 수준 유지
 - 유통시장 활성화: 소매 단계에서 경쟁은 주로 산업소비자와 지역 공급기업을 위한 소매계약의 장기간으로 인해 종종 제한됨
 - 투명성 확보: 망가용성에 관한 정보의 특별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적시의 시장정보가 부족. 또한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중요한 정보 비대칭 존재
 - 요금형성: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요금형성은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시장의 충분한 이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균형 필요: 전기 및 가스 영역에서 지역균형과 시장균형은 매우 적고,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척 복잡하고 상이한 규칙들로 특징 지워짐
- 효과적인 경쟁과 규제의 조화는 완화된 전력시장 및 가스 시장을 이루는데 필요함

▶ 주제어 : 전기·가스요금, 요금조정조항, 요금납용, 요금납용통제, 에너지산업법, 민법, 카르텔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he price worthy supply of energ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rowth in high industrialized society as Korea. Energy prices and costs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for competitive power. However high energy prices and costs result in real production losses or in reducing expenses for consumer goods. In view of constantly rising of energy prices for end customers notably energy sources as electricity and gas are the focus of the public attention.
-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pproach to legislation and legal practice concerning energy resources and production in Germany.
- In April 1998, Germany was at the forefront of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by removing all the legal hurdles for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Germany has amended the Energy Industry Act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several times since 1998, thus abolishing old-fashioned monopolies and creating competitive markets in generation and supply. It leads to falling energy prices and industry restructuring in a more competitive European market. Germany introduced quite strong and reliable regulatory authorities.

- Based on provisions in the EnWG, the Federal German Government decided on new regulations for grid connection and grid use, as well as for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in the electricity and gas sector. In the electricity, these regulations are StromGKV and NAV, in the gas sector GasGKV and NDAV.

II. Outline of Substantial Contents

- Germany has implemented Directive 96/92 o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via the act on the re-regulation of the EnWG and the amendment of cartel law. However, Germany has not chosen to implement the minimum gradual liberalization required by the EU, rather it has fully liberalized the electricity market. The main objective of the energy law reform was to arrive at cheaper electricity and gas prices through competition.
- Relationship between EnWG and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in the Regulation of Electricity & Gas Prices
 - The Sections of the EnWG and GWB grant the right to access energy networks but do so on very different legal bases. The former operates as an *ex ante* regulatory tool, the latter as *ex post* competition law. Particularly for the topic of grid fee regulation, the EnWG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special Act.

- The provisions of the GWB are no longer applicable insofar as the provisions of the EnWG. Published and thus authorized network charges bind the BKartA and state competition authorities in proceedings concerning electricity & gas prices for end consumers.
- The general prohibition of an abusive exploitation of a dominant position is contained in section 19 para. 1 GWB. With the aim of combating abusive practices in the energy sector, the German legislator provided a special norm particularly for the price control in the energy sector in section 29 GWB. This clause shall sharpen the instruments of competition law in order to tackle the excessive energy prices effectively. The provision is limited in time until the end of 2017.
- Whether the calculation of electricity & gas prices based on the oil price is admissible under antitrust law is subject of debate. In particular, it is discussed whether this pricing is still appropriate considering the changed nature of the liberalized electricity & gas markets, and if this pricing should be regarded as an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s.
- Gas prices in Germany have traditionally been linked to the oil price. More specifically, consumer prices for natural gas as well as the import prices for natural gas have been linked to the price for heating oi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ference price for natural gas. However, it regards an abolition of the linkage to the oil price alone not to be a sufficient measure to reach a competitive price mechanism.

- In judgment in 24 March 2010, VIII ZR 304/08,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rejected a contractual clause in a standard form contract that linked the gas price to the oil price. This court decision, however, was not based on antitrust law but was concerned with restrictions on standard form contracts set forth by the Civil Law Code. Moreover, it only dealt with a contract for special customers. According to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the standard form clause in the concrete case would have given the gas supply company the chance to increase profits without taking account of a potential increase in prices in every possible case. Although the gas import costs that are bound to the oil price may be a relevant factor for the formation of prices towards the final consumer, other factors like grid bound costs, marketing costs or levi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II. Expected Effects

- The study's key find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Market concentration at the wholesale & retail level: Wholesale & retail markets of Electricity and Gas remain national in scope and feature the high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 Downstream markets: Competition at the retail level is often limited mainly due to the long duration of retail contracts for industrial customers and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reliable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markets, with specific respect to information on network

availability. There is also a significant information and asymmetry between vertically integrated and non-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 Price formation: More effective and transparent price formation is needed to deliver the full advantages of markets opening to consumers.
- Balancing markets: In the electricity & gas sector, balancing zones and markets are very small and characterized by very complex and divergent rule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new entrants to operate on the market.
- A combina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and regulation is required to achieve a liberalized electricity & gas market.

► Key Words : Elektrizitäts- und Gaspreis, Preisanpassungsklauseln, Preismissbrauch, Preismissbrauchkontroll, Energiewirtschaftsgesetz, Zivilrecht, Kartellrech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 2 장 전기·가스 관련 요금의 개관	23
제 1 절 개 요	23
제 2 절 전기·가스망요금	24
제 3 절 전기·가스요금	30
1.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30
2. 가스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35
제 3 장 전기·가스요금의 사후적 규제	41
제 1 절 개 요	41
제 2 절 전기·가스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43
1. 개 관	43
2. 약관규제의 적용	44
3. 보편적인 공급조건	45

제 3 절 전기·가스요금의 민법상 규제	47
1. 개 관	47
2. 요금조정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48
3. 형평성 통제	51
제 4 절 전기·가스요금의 경쟁법상 규제	52
1. 개 관	52
2. 카르텔법 제29조의 인적 적용범위	54
3. 카르텔법 제29조의 구성요건	56
제 4 장 결 론	59
참 고 문 헌	65

그림목차

<그림 1>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내역 및 동향	31
-----------------------------------	----

표목차

<표 1> 전기요금의 변동	34
<표 2> 가스수입가의 월별 변동	37
<표 3> 가스요금의 변동	3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최적의 자원배치로 이끌도록 사후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장구조는 국가의 경제정책에서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보이는 손을 확충하곤 한다. 에너지공급시장에서 시장실패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경쟁적인 자율규제체계가 자연독점에 근거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조절해야 하는 국가적인 규정을 정한 것이다. 고권적으로 정해진 규정들은 시장을 촉진, 구조화, 강화, 보호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규제행정(Ordnungsverwaltung; Eingriffsverwaltung) 또는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보호, 조장, 조정 등 규제하는 행정활동으로 이해된다.¹⁾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호에서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호에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은 행정규제를 기본적으로 침해적 행정작용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이 수반되는 행정지도나 간접적인 경제조정행위 등은 이 법들의 적용대상이 되

1) 한건우, 행정법(II), 1996, 228면. 김동희, 행정법 I, 2011, 17~18면; 석중현, 일반행정법(상), 2002, 22면 비교.

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기·가스요금³⁾에 대한 것은 침해적 경제행정규제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독점규제와 물가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

이와 달리 시장감독은 영업감독의 한 형태로 국가적인 지위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한 감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감독은 시장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구조에 개입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침해적 행정에 속한다.⁵⁾ 따라서 시장감독의 개념은 정기적인 시장감시, 규제위반의 규명, 제재의 포고와 집행을 포함한다.

저렴한 또는 적절한 요금의 전기·가스공급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위해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에너지집약적인 생산절차를 위해서도 에너지요금 및 비용은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에 속한다. 하지만 생산경제의 일반적인 영역과 개인가정에서의 높은 에너지비용은 실질적인 생산손실 또는 비에너지적 소비재에서 지출감소로 나타난다.⁶⁾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금수준을 보면, 무엇보다도 전기·가스요금은 공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망산업⁷⁾에 있어서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부문의 전력거래만 일부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송전과 배전 그리고 판매부문은 한

2) 김성수, 개별행정법, 2004, 194면. 규제행정의 경우,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우도 있다,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2, 2014, 232면.

3) 여기에서 가스는 가스유전에서 바로 채취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생기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제외된다.

4) 한견우, 위의 책, 230면 비교. 특히, 물가규제란 자동적 조절작용으로는 가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인위적으로 가격의 폭락·폭등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행정청이 가격결정방법과 가격결정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향기, 행정법개론, 2005, 766면.

5) Röhl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2010), § 18 Rn. 44 *et seqq.*

6) Buttermann/Hillebrand/Baten, ZfE 2008, 187.

7) 철도, 통신, 전기, 천연가스, 식수, 하수 등이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망을 통해 재화와 용역 등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을 망산업이라고 한다.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2014, 71면 이하 비교.

국전력공사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⁸⁾ 가스산업에서 가스수입과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소매부문은 사업자간 공급권역의 중복을 금지하는 허가제로 인해 권역별로 1개의 사업자만 존재하는 지역독점구조로 경쟁이 차단되어 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주어지고 있다. 이에 비견하여 독일에서는 1998년 민영화 이전부터 이미 에너지산업의 상당한 부분에서 사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다. 오늘날 에너지공급 및 유통시장에서 발전과 판매는 원칙적으로 경쟁이 지배하고 있어 전기·가스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공급자를 바꿀 수도 있다.¹⁰⁾ 하지만 에너지공급망 부문에서는 독점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다.

독일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BNetzA)은 전기, 가스, 통신, 우편, 철도의 5가지 망시장에서의 규제와 감독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다.¹¹⁾ 그 중에서 전기 및 가스와 관련한 주된 업무로는 전기·가스공급기업의

8) 이와 관련하여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2014, 136면;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3, 233면 이하 참조.

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산업인 가스산업에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 - 공정위, 가스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2010. 1. 4, [http://www.kdi.re.kr/infor/ep_view.jsp?num=104978&dcount=30&searchtopic=\(최근 접속일: 2014년 12월 21일\) 첨부파일](http://www.kdi.re.kr/infor/ep_view.jsp?num=104978&dcount=30&searchtopic=(최근%20접속일:2014년%2012월%2021일)%20첨부파일) 참조.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의 구조개편 현황에 대한 개관은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3, 269면 이하 참조.

10) 2012년 8월 4일부터 공급자 변경기간이 망소비자에게 새롭게 적용되었다. 에너지산업법 제20조a 제2항에 의하면, 공급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3주를 넘어가서는 안 되며, 이 기간은 새로운 공급자에 의해 망사업자에게 망사용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시작된다, Theobald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 Rn. 137. 하지만, 전력영역에서는 E.ON, RWE, EnBW, Vattenfall Europe의 4개 회사에 의해 거의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력회사들을 지원했던 1935년에 제정된 에너지산업법에 있다, Petersen,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Sector in the EU and in Russia", *European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Review* (June 2009), at 171 (173), fn. 23.

11) 연방망규제청의 지위, 규제 및 권리구체절차에 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봉기,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2007), 344면 이하 참조.

소유에 있는 전력공급망과 가스망에 차별 없는 진입과 망사용요금을 규제한다.

전기·가스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요금조정조항은 전기·가스의 장기간 공급계약에서 요금과 서비스의 균형을 위한 하나의 조치에 속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항은 공급자에게 장기간 산출의 위험을 줄이고, 사후적으로 그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가 장래 비용증가를 계약 체결 시 위험가산금에 의해 완화시키려고 함을 계약상대방에게 주의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금조정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까지 유럽사법재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EuGH)¹²⁾와 독일 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¹³⁾ 판례의 동향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공급 외 공급계약에서 요금조정조항의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기업거래에 대한 영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에너지정책적 전략은 기후 및 환경보호, 공급안전, 유익하고 적절한 공급요금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여기에 경쟁원칙, 가격신호(price signal),¹⁵⁾ 시장구조 등의 부수적인 역할이 제기되고 있다.

12) 예를 들어 EuGH, Urteil vom 21. 3. 2013, C-92/11.

13) 예를 들어 BGH, Urteil vom 31. 7. 2013, VIII ZR 162/09.

14) 유럽집행위원회의 에너지정책 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및 효율 달성, 진정한 유럽대륙의 통합된 에너지시장 건설, 소비자자치의 강화 및 안전과 안보의 최고 수준 달성, 에너지기술과 혁신에서 리더십의 확대, 유럽 에너지시장의 외적 차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Energy 2020: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COM (2010) 639 final, at 5 *et seq.* 참조. 이와 관련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증대가 위축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Haucap/Coenen, Mehr Plan- als Marktwirtschaft in der energiepolitischen Strategie 2020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in: Festschrift für Franz Jürgen Säcker (2011), S. 721 (735).

15) 가격신호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매겨진 가격을 통해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달된 정보를 말하며, 따라서 가격이 책정된 항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http://en.wikipedia.org/wiki/Price_signal(최근접속: 2014년 10월 1일).

우리나라 전력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기·가스산업 규제에 당장 적용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 단기적으로는 법학 발전 및 관련부처의 산업규제에 기여할 바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전기·가스산업에서 본격적인 시장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음으로 사후규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적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규제법제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사후규제의 투명성과 예견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독일에서 전기·가스공급에 따른 공급업자의 요금납용과 책정된 요금의 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통제에 두고 있다. 독일의 전기·가스 관련 요금의 규제에 대한 주요한 법적 근거로는 에너지산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EnWG),¹⁶⁾ 전력망요금명령(Stromnetzentgeltverordnung: StromNEV)¹⁷⁾과 가스망요금명령(Gasnetzentgeltverordnung: GasNEV),¹⁸⁾ 유인규제명령(Anreizregulierungsverordnung:

16) 정식 명칭은 전기·가스공급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이다. 이 법률은 1935년 12월 13일에 최초 제정된 이후, 2005년 7월 7일에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4년 7월 21일에 개정되었다.

17) 정식 명칭은 Verordnung über die Entgelte für den Zugang zu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n (전력공급망의 접속요금에 관한 명령)이다. 2005년 7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4년 8월 1일에 개정된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18) 정식 명칭은 Verordnung über die Entgelte für den Zugang zu Gasversorgungsnetzen (가스공급망의 접속요금에 관한 명령)이다. 2005년 7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3년 8월 22일에 개정된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ARegV),¹⁹⁾ 전기기본공급명령(Stromgrundversorgungsverordnung: StromGVV)과²⁰⁾ 가스기본공급명령(Gasgrundversorgungsverordnung: GasGVV),²¹⁾ 카르텔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과 민법(Bürgerliches Gesetz: BGB)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및 카르텔법상 관련 내용이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전기 및 가스와 관련한 망요금과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개관해 보면서, 망요금에 대한 사전규제의 내용도 잠깐 언급해 본다. 제3장에서는 전기 및 가스요금의 사후규제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요금조정조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카르텔법에 근거한 사법심사의 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독일 문헌과 온라인의 전자자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인터넷자원을 보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워크숍 개최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의 방향, 수정, 내용 보강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²²⁾

19) 정식 명칭은 에너지공급망의 유인규제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Anreizregulierung der Energieversorgungsnetze)이다.

20) 정식 명칭은 저전압망 전기의 가정용고객에 대한 기본공급 및 보완공급의 일반 조건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Grundversorgung von Haushaltskunden und die Ersatzversorgung mit Elektrizität aus dem Niederspannungsnetz)이다.

21) 정식 명칭은 저압망 가스의 가정용고객에 대한 기본공급 및 보완공급의 일반 조건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Grundversorgung von Haushaltskunden und die Ersatzversorgung mit Gas aus dem Niederdrucknetz)이다.

22) 이와 관련해 이문지 교수, 김명용 교수, 김명엽 교수에 의한 전문가 검토의견과 외부심의위원인 이봉의 교수의 심의의견은 본 연구의 성과에 적절히 녹여져 있음을 밝힌다.

제 2 장 전기·가스 관련 요금의 개관

제 1 절 개 요

전기 및 가스공급에서 뚜렷한 가격하락에 대한 희망은 1998년 4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독일 전기·가스시장의 경쟁상 개방과 결부되어 있었다. 우선 이러한 기대는 전기영역에서 충족되었다.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난 후 3년 동안 산업용 고압 특별수요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전기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1998년 초보다 약 25% 이상 낮았고, 농업 및 상업영역에서 전기요금의 하락은 전기세에 의한 추가부담을 훨씬 상쇄하였다.²³⁾ 하지만, 이러한 사이에 최초의 하락 추세는 뚜렷한 요금상승에 의해 뒤바뀌었다. 또한 가스에 대한 소비자요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1998년과 비교해서 소비자요금은 거의 2배로 상승하였다.²⁴⁾

에너지공급망에서는 자연적인 독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독점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요금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자 사이에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망사업자가 망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징수한다면, 망접속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시각에서 원하는 상황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전력 및 가스의 도매요금이든 소매요금이든 그 공급 및 사용요금에 대해 사전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전기·가스와 관련한 요금은 크게 도매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망요금 또는 망사용요금과 소매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요금으로 나누어진다.

23) Buttermann/Hillebrand/Baten, ZfE 2008, 187.

24) *Ibid.*;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Energie in Deutschland: Trends und Hintergründe zur Energieversorgung, 2013, S. 44 표 6, <http://www.bmwi.de/Dateien/Energieportal/PDF/energie-in-deutschland>(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비교.

제 2 절 전기·가스망요금

독일의 사회국가적인 요청에 따른 에너지공급보장의 명제는 입법자들에게 적합한 법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공급요금의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²⁵⁾ 독일에서 요금규제는 이미 1935년 에너지산업법에서 에너지공급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상관개념으로 에너지공급요금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구체적인 요금한계를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기·가스수급을 위한 조건과 요금은 전기·가스의 수요자들에게 법적으로나 경제적인 관계의 고려 시 사실상 전기·가스수급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가스공급의 보장은 융통성 있는 요금의 가능성 또는 요금규제의 문제와 관련한다.²⁶⁾ 망사용에 대한 요금의 국가적인 감독은 시장규제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고,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과 전체 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발전소로부터 소비자에게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공급능력이 있는 전력망은 필수적이다.²⁷⁾ 망기반시설의 건설 및 정비 시 그리고 계속적인 운영 시 망사용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도매요금에 속하는 망연결 및 망사용요금은 망사업자에게 망접속요금과 함께 공급보장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정비, 유지 및 일반적인 망연결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급망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도록 본질적으로 적정한 요금으로 책정되어야 한다.²⁸⁾ 이때 망사업자의 유지 및 확장에 드는 필수적인 비용과 망 관련 새로운 투자

25) Schiller,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und die Sicherstellung von Anschluss und Versorgung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2012), S. 339.

26) *Ibid.*

27) 현재 독일에서 전력망사업자로는 Amprion, TransnetBW, Tennet TSO, 50Hertz Transmission이 있다.

28) Schiller, *op. cit.*, S. 273.

비용도 고려된다.²⁹⁾ 망접속을 위해 전기·가스공급망의 사업자에 의해 부과된 요금은 연방망규제청에 의해 국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최대한 사전에 규제기관에 의해 허가되었거나, 이러한 행정청에 의해 확정된 수익상한(Erlösbergrenz, revenue cap)의 범위에서 변동하는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³⁰⁾ 독일의 입법자들은 유인규제명령에서 에너지산업법 제21조a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 요금상한(price cap)규제에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³¹⁾ 수익상한은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개별적인 효율조건, 일반적인 금전가치동향, 생산성 요인, 투자촉진을 위한 확대요인 등이 있다.³²⁾

연방망규제청에 따르면, 가정용에 대한 전기망요금의 비용은 2010년 기본공급에서 약 6 ct/kWh를 차지했고, 이는 전기요금의 약 25%에 해당하며 2006년 이래로 20% 이상 감소를 의미한다.³³⁾ 가스의 경우, 2006년 이래로 적절한 망요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약 1.3 ct/kWh로 가정용 가스요금의 약 20%를 차지했다.³⁴⁾ 산업용에 대한 망요금은 본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싸다.

우선 망요금규제의 법적 근거로는 에너지산업법 제21조 이하, 에너지산업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공포된 전력망요금명령 및 가스망요금명

29) Schiller,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und die Sicherstellung von Anschluss und Versorgung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2012), S. 273 Fn. 709; Buttermann/Hillebrand/Baten, ZfE 2008, 187 (192).

30) Theobald/Zenke/Lang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7 Rn. 1.

31) Rug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8 Rn. 10. 우리나라의 요금상한지정제도에 관해서는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3, 204면 이하 참조.

32) Ruge, *op. cit.*

33) Bundesnetzagentur, Markt und Wettbewerb Energie Kennzahlen 2010, S. 24, http://www.bundesnetzagentur.de/SharedDocs/Downloads/DE/Allgemeines/Bundesnetzagentur/Publikationen/MarktWettbewerb/Brosch%C3%BCreMarktWettbewerbEnergieKennzahlen2010pdf.pdf?__blob=publicationFile&v=2(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21일).

34) Bundesnetzagentur, *op. cit.*, S. 55.

령, 유인규제명령, 그밖에 저전압연결명령(Niederspannungsanschlussverordnung: NAV)³⁵⁾과 저압연결명령(Niederdruckanschlussverordnung: NDAV)³⁶⁾이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법 제23조a 제1항에 따라 망요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³⁷⁾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망요금은 망접속요금과 관련하고 있고, 망접속 보장의 부가적인 결과를 의미할 수 있다.³⁸⁾ 그래서 망요금이 비교시각에 있지 않고 비용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야 하고, 유인규제에 의해 요금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망접속에 대한 모든 요금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인규제의 개별적인 사항은 에너지산업법 제21조a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전력망요금명령 및 가스망요금명령은 민영화된 에너지시장에서 전력망사업자의 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망사용요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명령은 에너지산업법의 발효로 인해 처음부터 사적 영역에서 정하고 있던 망사용요금에 대한 단체협약을 국가적인 규제에 놓이게 한 것이다.³⁹⁾

전력망요금명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비전형적인 망사용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전기소비자는 부분적으로 망요금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망소비자의 최고 부하액이 시간적으로 망 및 변압영역으로부터 모든 구매의 연간 부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충족한다. 이에 따라 망사업자는 망영역 및 계절별

35) 정식 명칭은 저전압전기공급을 위한 망연결 및 망사용의 일반조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en Netzanschluss und dessen Nutzung für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in Niederspannung)이다.

36) 정식 명칭은 저압가스공급을 위한 망연결 및 망사용의 일반조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en Netzanschluss und dessen Nutzung für die Gasversorgung in Niederdruck)이다.

37) 입법절차 단계에서는 매우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Frank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9 Rn. 67 Fn. 200.

38) Theobald/Zenke/Lang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7 Rn. 44.

39) *Ibid.*, Rn. 1.

로 그의 최고 부하시간대를 공개한다. 이러한 시간대에 따라 망소비자의 적절한 부하경과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을 망비용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⁴⁰⁾ 현재까지 에너지산업법은 망요금에 대해 충분한 법정 허가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⁴¹⁾고 한다.

가스망요금명령 제4조 이하에서는 망요금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종류, 계산부서, 산출항목 산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명령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효율적인 망접속을 실현하기 위해 비용과 요금의 조사를 결정할 포괄적인 권리를 갖는다.

에너지산업법에 비견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인규제명령은 비용에 기초한 진정한 망요금의 형성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²⁾ 유인규제는 현존 비용, 비용으로부터 수익의 주기적인 분리, 효율조건, 특정된 비용의 계속적인 산정이라는 특색을 갖는다.⁴³⁾ 그래서 망사업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비용을 줄이려는 자극을 받는다.⁴⁴⁾ 그렇지만 망요금에 대한 유인규제의 새로운 시스템은 에너지산업법, 유인규제명령, 전기 및 가스망요금명령 간 협력의 결과로 나타난다. 망요금을 허가받기 위해서 망사업자가 그의 요금을 연방망규제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던 절차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⁴⁵⁾

이 명령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수익상한, 즉 허용된 망사업자의 총수익의 규정을 위한 공식에 있다. 이러한 규제공식

40) OLG Düsseldorf, Urteil vom 6. 3. 2013, VI-3 Kart 14/12.

41) Redaktion beck-aktuell, becklink 1025289.

42) Hummel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60. Erg.-Lfg. 2008), ARegV Einf. Rn. 10 *et seq.*

43) *Ibid.*, Rn. 13 *et seqq.*

44) Rug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8 Rn. 2.

45) Frank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9 Rn. 67.

의 핵심적인 요소로 우선 기업의 개별적인 비용심사에 따라 수익상한의 기본적인 수준이 정해진다. 검증된 총비용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비용부분, 잠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비용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용부분의 3가지 비용부분에서 할당된다.⁴⁶⁾ 특히, 이 명령에서 유인규제는 망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절감과 효율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에 있다.⁴⁷⁾ 그리고 이는 객관화된 효율비교에 의한 조건으로 매년 비용심사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 사전 규제의 범위에서 완화된 개입을 의미한다.⁴⁸⁾

공급시장에서 망사용에 대한 요금인상은 유통시장에 있는 망사업자에 의해 그의 망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범위에서 지금까지 에너지산업법 제23조a에 따라 재차 행정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⁴⁹⁾ 하지만 유인규제의 시행 이후, 유인규제명령 제17조에 따라 수익상한으로 망요금의 1년 이내 조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⁵⁰⁾ 이 명령은 수익상한 또는 망요금의 1년 이내 조정을 같은 명령 제4조 제4항 1문 2호에 따라 오직 불이익(Härtefall)의 허가를 위해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밖에 조정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진다. 계약상 요금조정조항 또는 망요금의 추가산정조항은 이러한 기본조건을 고려해야 한다.⁵¹⁾

망사업자의 자연독점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기·가스공급의 공급제한과 전기·가스망의 비이중가능성(fehlende Duplizierbarkeit)에 근거

46) 상세한 것은 Lismann, NVwZ 2014, 691 (693 *et seq.*) 참조.

47) <http://de.wikipedia.org/wiki/Netznutzungsentgelt>(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21일).

48) Bourwieg in Baur/Salje/Schmidt-Preuß,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2011), Kap. 45 Rn. 7.

49) Hartmann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65. Erg.-Lfg. 2010), EnWG § 20 Rn. 87.

50) *Ibid.*, Rn. 88.

51) *Ibid.*

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지위에서 책정된 높은 망요금은 시장 및 경쟁에 큰 위험을 안길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에 의해 에너지산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차별 없는 망접속에 대한 경쟁자의 요구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망접속 청구에 의한 망개방과 더불어 망접속요금의 정도는 경쟁적인 전기·가스시장의 개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금은 경쟁자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한다. 적절한 조건으로 망접속이 보장된다면, 망접속 청구의 효과적인 집행과 원하는 공급경쟁은 보장될 것이다. 전기·가스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은 망사업자가 수익을 독점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도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소매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져 있다. 도매요금의 형성 및 인상이 사전적인 규제를 받아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민법 및 카르텔법은 타당하고 균형 잡힌 망요금을 위해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⁵⁴⁾ 또한 망요금의 행정적 심사와 규제와 함께, 에너지산업법 제30조 이하에서는 망사업자의 남용적 행태를 행정절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 Kling,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2013), S. 1

53) 에너지산업법 제20조 제1항 1문에서는 망접속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문제되지 만, 망사업자에 의해 특정된 조건을 위한 계약협의 또는 계약체결의 개시에 대한 청구는 중요하지 않다, Kling, *op. cit.*, S. 2 Fn. 5.

54) Theobald/Zenke/Lange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7 Rn. 16 *et seqq.*; 또한 Danner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79. Erg.-Lfg. 2013), Einf. Rn. 84 비교. 카르텔법상 망요금 규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Kling, *op. cit.*, S. 49 *et seqq.*; 민법상 망요금 규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ibid.*, S. 115 *et seqq.* 참조.

제 3 절 전기·가스요금

1.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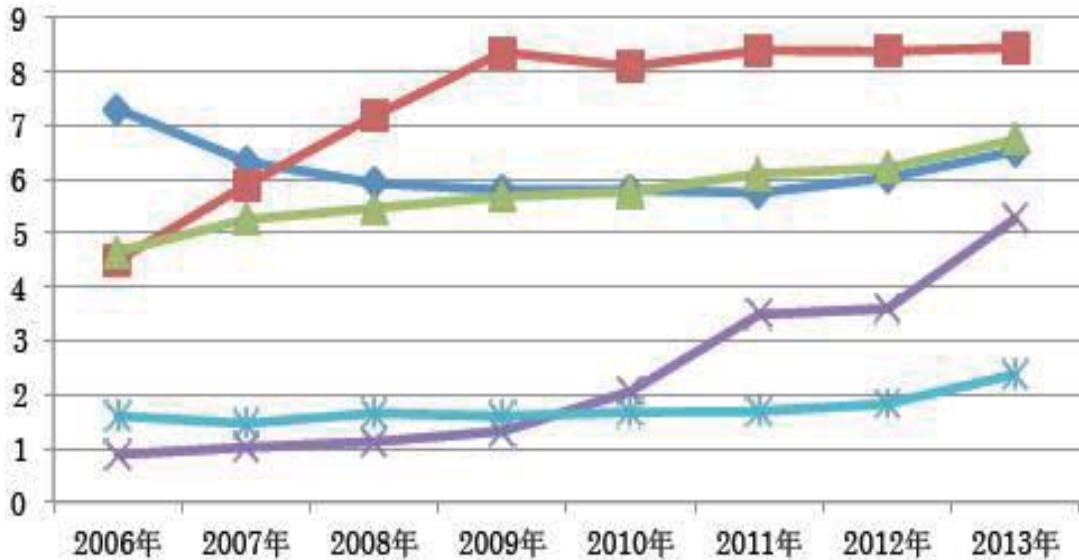
(1) 구성요소

전기요금의 경우 발전과 망사용에 대한 요금⁵⁵⁾ 및 부담금, 부과금, 세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⁶⁾ 여기에는 특히, 공급망에 대한 고정비용과 함께 발전용량에 대한 중요한 비용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기요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전기소매 요금의 인상, 도매요금의 인하 및 도매전력의 침체, 망비용과 조세공과금의 증대로 이어졌다고 한다.⁵⁷⁾

55) 전기·가스요금에서 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한 연방망규제청의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전기요금에서 망비용은 산업용의 경우 39.1%, 영업용의 경우 34.3%, 가정용의 경우 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가스요금에서 망비용은 산업용의 경우 7.4%~7.75%, 영업용의 경우 17.69~18.4%, 가정용의 경우 19.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Kling,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2013), S. 2.

56) 2014년 1월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구성요소에는 발전과 판매 23.86%, 망비용 23.17%,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상 부과금 21.71%, 부가가치세 15.97%, 전기세 7.13%, 면허부담금과 열병합발전 부과금 및 차단이 가능한 부하(shedable load)에 대한 부과금 6.33%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http://www.check24.de/strom/strompreiszusammensetzung>(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7일); <http://de.wikipedia.org/wiki/Strompreis>(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7일), fn. 3.

57) 김영호, “유럽내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 에너지타임즈, 2014. 8. 21,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0>(최근 접속일: 2014년 12월 21일).

<그림 1>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내역 및 동향⁵⁸⁾

	송배전 관련비용
	전력조달 공급비용
	세금
	재생에너지촉진부과금
	기타요금

기본공급 및 보완공급 이외에 특별계약 시 요금은 공급계측이 없는 표준부하프로필 가정용 고객과 소규모 영업용 고객과의 완전공급계약 시 대부분 기본요금(Grundpreis) 또는 계측요금(Messpreis)과 각 kW 당 전력량요금(Arbeitspreis)으로 이루어진다.⁵⁹⁾ 계량기 및 계측관리의 민영화를 고려한다면, 면허부담금과 망요금에 대한 제한이 입법적으로 미

58) 木村啓二, ドイツの電気料金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賦課金の分析, http://www.seeps.org/meeting/2014/submit/abst/2078_FGfpg3hP.pdf(최근 접속일: 2014년 12월 21일).

59)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02.

미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비용에 대한 일람과 요금선택 또는 변경을 위한 유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⁶⁰⁾ 여기에서 적절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계약형성 시 개별적인 요금조항은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내용통제(Inhaltskontrolle)에 영향을 받는다. 즉,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의 조항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등록된 전력계측을 갖춘 대형 영업고객, 산업수요자 또는 배전자(Weiterverteiler)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별계약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공급요금(Leistungspreis)과 각 kW_s 당 전력량요금으로 이루어진다. 민영화 이전에 연간공급요금이 이미 책정되었던 경우, 민영화 이후에는 월/주/시간별 공급요금을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변동에 따른 재정적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다.⁶¹⁾

전력량요금에서 당사자들은 최고/최저 시간대, 주일, 주말, 소규모 시간단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편차측면에서 누가 예측위험을 부담하는지, 어떻게 계약요금(Vertragspreis)에서 차이를 없애는지, 어느 기한 및 어느 범위에서 예측이 고객에 의해 맞춰질 수 있는지 규제해야 한다.⁶²⁾ 단편적인 요금관계와 수직적인 요금관계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편적인 요금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요금과 비교적 높은 전력량요금으로 이루어지며, 수직적인 요금관계는 비교적 높은 공급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량요금과 결합하여 나타난다.⁶³⁾

요금경감은 차단 가능한 계약의 합의에 의하거나 경부하요금표(Schwachlasttarif)에 의해 가능하다.⁶⁴⁾ 에너지산업법 제40조 제5항 1호

60)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02.

61) *Ibid.*, Rn. 203.

62) *Ibid.*, Rn. 204.

63) *Ibid.*, Rn. 205.

64) *Ibid.*, Rn. 206.

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에너지공급기업에게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소비의 관리를 촉진할 요금표를 제공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 공급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소비자 또는 망사업자가 망을 사용하거나 약부하시간에 공급하는 것은 부하절정의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소비가 감소한 경우, 특히 요금규정을 합의할 수 있다.⁶⁵⁾

(2) 현 황

유럽통계청(Eurostat)의 보고에 의한 2012년 독일 내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모든 세금 및 부담금을 포함하여 26.4 ct/kWh, 독일 연방에너지·수자원관리협회(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BDEW)의 보고에서는 25.89 ct/kWh였다.⁶⁶⁾ 그리고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14년도 상반기 독일 내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29.81 ct/kWh이다.⁶⁷⁾ 유럽통계청의 보고에 의한 2012년 독일 내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500 MWh/a 소비 시 14.9 ct/kWh, 2000~20,000 MWh/a 소비 시 11.6 ct/kWh로 나타났다.⁶⁸⁾ 이어서 최근 2014년도 상반기에는 500~2000 MWh/a 소비 시 15.86 ct/kWh로 나타났다.⁶⁹⁾ 이와 같이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요금이 상승곡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5)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06.

66) http://de.wikipedia.org/wiki/Strompreis#cite_note-1(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6일).

67) Eurostat, Electricity prices for domestic consumers, from 2007 onwards - bi-annual data, Last update: 3. 10. 2014,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nrg_pc_204&lang=en(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6일).

68) http://de.wikipedia.org/wiki/Strompreis#cite_note-1(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6일).

69) Eurostat, Electricity prices for industrial consumers, from 2007 onwards - bi-annual data, Last update: 3. 10. 2014,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dvsc=9>(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6일).

<표 1> 전기요금의 변동⁷⁰⁾

산업용	단 위	1990	2000	2005	2010	2011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변동율(%)
특별수요자의 전기	c/kWh*	4.8	3.2	3.4	4.5	5.1	6.3
정액수요자의 전기	c/kWh	10.6	7.4	9.2	11.6	12.9	21.7
가정용	단위	1990	2000	2005	2010	2011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변동율(%)
특별수요자의 전기	c/kWh	5.8	5.9	7.3	7.8	8.44	45.5
정액수요자의 전기	c/kWh	15.3	15.6	19.4	22.08	23.79	55.5

* c/kWh: c = 유로화 cent, 킬로와트시(kWh) = 시간당 전력사용량

70)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Energie in Deutschland: Trends und Hintergründe zur Energieversorgung, 2013, S. 44 표 6, <http://www.bmwi.de/Dateien/Energieportal/PDF/energie-in-deutschland>(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이 표에서 산업용 요금은 소비세, 영업급부(Handelsleistung), 운송급부(Transportleistung)를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용 요금에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산업용 특별수요자 전기요금 가정용 야간전기요금 또는 전기 열펌프에 대한 특별요금을 쓰는 자는 특별수요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정액수요자그룹은 개인가정에서 진동, 냉장, 구동장치, 통신 등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전기요금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2. 가스요금의 구성요소 및 현황

(1) 구성요소

원칙적으로 가스시장에서도 생산, 수입, 운송, 최종소비자에게 분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은 우선 기반시설 측면에서 가스공급의 비용과 개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을 구별한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인 시장단계에서 경쟁정도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현재 수준의 가스요금은 수입 및 자국 내 후원 등 가스조달비용, 운송비용, 분배비용, 조세 및 부담금, 기타 영업비용 및 이익 등 개별적인 구성요소로 세분화되어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⁷¹⁾ 기타 영업비용 및 이익은 최종소비자요금과 총비용 사이의 결과로써 나타난다. 연방통계청에 의해 여러 소비자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가스공급의 대상으로부터 매년 조사하는 평균적인 수익이 최종소비자요금으로 사용된다.⁷²⁾ 이는 요금지수와 함께 요금수준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소비자요금과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⁷³⁾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가스요금은 석유의 수입량과 수입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⁷⁴⁾ 특히, 가스에 대한 소비자요금 및 수입요금은 가스요금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가격인 난방용 기름에 대한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 의무인수책무(*take or pay obligations*)를 포함한 장기간

71) Buttermann/Hillebrand/Baten, ZfE 2008, 187 (188).

72) *Ibid.*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수익에서 개별적인 소비자요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유럽연합 통계청이 조사를 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명시된 평균적인 수익과는 상당히 구별될 수 있다, Buttermann/Hillebrand/Baten, *op. cit.*, 187 (188), Fn. 2.

74)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19; Petersen/Thomas, *Energy Law in Germany* (2011), para. 635; Buttermann/Hillebrand/Baten, *op. cit.*, 187 (188). 월별 가스의 생산 및 수입가격에 대한 변동은 연방경제수입통제청(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에서 공개하고 있다.

공급계약에서 가스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도 가스요금을 석유가격에 연계했다.⁷⁵⁾ 가스의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에서 9개월의 차이에 따른다.

이처럼 가스조달비용은 본질적으로 해외 가스 생산자와 국내 가스 수입업자 사이에 계약상 합의된 공급조건을 반영하며, 공급자는 이러한 요금을 가스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가격에 기초한 가스요금의 산정이 독점금지법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⁶⁾ 특히, 민영화된 에너지시장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요금이 여전히 적절한지 논의되고 있다. 2009년 독점위원회(Monopolkommission)는 가스요금에 대한 지표를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경쟁력 있는 요금체계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산정이 고려되지 못하고 석유가격에만 연계시키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⁷⁷⁾ 다른 원료와 마찬가지로 석유가격의 변동은 불확실성과 결부되어 있고, 이는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부담해야 하는 전형적인 시장위험에 속한다. 심지어 2010년 연방대법원은 가정용 고객과의 최종고객계약 또는 특별고객계약에서 석유가격에 가스요금을 연계한 약관에 있는 계약조정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으며,⁷⁸⁾ 이후 이러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⁷⁹⁾ 하지

75) Petersen/Thomas, *Energy Law in Germany* (2011), para. 635.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의 엄격한 시행에 대한 입장에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3, 279면 이하 참조.

76) Petersen/Thomas, *op. cit.*, para. 636.

77) Monopolkommission, *Strom und Gas 2009: Energiemärkte im Spannungsfeld von Politik und Wettbewerb*, BT-Drucksache 16/14060, 15. 9. 2009, Tz. 147 *et seqq.*

78) BGH, Urteil vom 24. 3. 2010, VIII ZR 304/08.

79)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19. 독일의 최대 원거리가스기업인 E.ON Ruhrgas는 러시아 공급자인 Gazprom과 2010년 2월에 석유가격에 전혀 연계하지 않는 가스공급계약에 합의하기도 했다, *Ibid.*

만, 이 판례는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하고 있어 특별고객에 대한 계약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현 황

장기간 공급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정해진 판매량은 유동적인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판매량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한계에서 유동적임을 제한적으로 부연해야 한다.⁸⁰⁾ 가스요금은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경쟁상황의 공통된 평가에 기초하여 특정 시점에 협정하며 기본요금으로 확정된다. 이어서 계약상 정의된 시간동안에 협의된 기본요금은 합의된 조정조항의 비율에 따라 집계된다. 조정저항은 일반적으로 가스공급자의 요금동향에 가스요금의 고착을 규정한다.

<표 2> 가스수입가의 월별 변동⁸¹⁾

연 도	2014년			전년도 대비 변경	
	양 (TJ)*	1,000유로 로 계산한 통계적 가치	가 격 (유로/TJ)**	양	가 격
1월	326,527	2,512,407	7,694	-0.1	-2.8
2월	307,290	2,268,442	7,382	+10.2	-5.9

80) Buttermann/Hillebrand/Baten, ZfE 2008, 187 (188).

81)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Aufkommen und Export von Erdgas: Entwicklung der Grenzübergangspreise ab 1991, 10. 2014, S. 2, http://www.bafa.de/bafa/de/energie/erdgas/ausgewaehlte_statistiken/egasmon.pdf(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참조.

제 2 장 전기·가스 관련 요금의 개관

연 도	2014년			전년도 대비 변경	
	양 (TJ)*	1,000유로 로 계산한 통계적 가치	가 격 (유로/TJ)**	양	가 격
3월	320,797	2,247,230	7,005	-7.0	-10.3
4월	245,065	1,632,519	6,662	-20.3	-14.4
5월	270,376	1,684,335	6,230	-13.8	-20.0
6월	251,463	1,568,063	6,236	-10.0	-18.9
7월	246,956	1,409,834	5,709	-18.8	-25.0
8월	261,722	1,466,846	5,605	-7.4	-25.3

* 1TJ (terajoule) = 1024joule = 23.88toe (1toe = 107kcal)

** 가스세 제외

산업용 가스요금은 1998년 이래로 가스 수입가격에 맞추어 현재 거의 3배로 증가했으나, 가정용 가스요금은 망비용 및 인원 등 비 가스 비용의 상당한 부분에서 형성되어, 세계시장의 요금 동향과 이자 및 임금수준 등 국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⁸²⁾ 하지만 조세 및 부담금의 특별규정은 산업용 및 가정용 고객 사이의 요금차이, 예를 들어 2011년에는 MWh 당 약 12유로가 나타났다.⁸³⁾ 전체적으로 가정용 고객의 가스요금 상승은 산업용 특수수요자에 비해 명백히 신중하게 이루어졌다.⁸⁴⁾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가정용 가스요금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계상한 요금충격(Preisimpuls)을 포함하여 MWh 당

82)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Energie in Deutschland: Trends und Hintergründe zur Energieversorgung, 2013, S. 41, <http://www.bmwi.de/Dateien/Energieportal/PDF/energie-in-deutschland>(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83) *Ibid.*

84) *Ibid.*

65.2유로 약 106% 상승했으나, 산업용 특수수용자에 대해서는 MWh 당 34.5유로 약 174% 상승했다.⁸⁵⁾

<표 3> 가스요금의 변동⁸⁶⁾

산업용	단위	1990	2000	2005	2010	2011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변동율
난방용 경유	€/l	0.19	0.31	0.42	0.63	0.84	342.1
난방용 중유	€/l	0.11	0.16	0.22	0.43	0.56	409.1
특별수요자의 가스	c/kWh	1.1	1.7	2.1	3.0	3.5	218.2
정액수요자의 가스	c/kWh	1.4	1.9	2.5	3.3	3.9	184.7
가정용	단위	1990	2000	2005	2010	2011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변동율
가솔린	€/l	0.61	1.02	1.21	1.41	1.54	152.5
디젤	€/l	0.53	0.80	1.07	1.23	1.43	169.8
난방용 경유	€/l	0.22	0.37	0.49	0.75	0.99	350.0
가스	c/kWh	2.8	3.8	5.1	6.2	6.5	131.3

8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Energie in Deutschland: Trends und Hintergründe zur Energieversorgung, 2013, S. 41, <http://www.bmwi.de/Dateien/Energieportal/PDF/energie-in-deutschland>(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산업용 및 가정용 가스요금의 전체적인 변동에 관해서는 *ibid.*, S. 41~42 그림 26과 그림 27 참조.

8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op. cit.*, S. 44 표 6, <http://www.bmwi.de/Dateien/Energieportal/PDF/energie-in-deutschland>(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17일). 이 표에서 산업용 요금은 소비세, 영업급부(Handelsleistung), 운송급부(Transportleistung)를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용 요금에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산업용의 특별수요자 가스요금은 500,000 MWh/a 이상의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학적인 기초원료 생산 영역과 강철 생산 시 가스가 투입되는 공정이 여기에 속한다.

제 3 장 전기·가스요금의 사후적 규제

도매요금에 해당하는 전기·가스망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방망규제청에 의해 사전규제를 받지만, 약관에 정해진 전기·가스요금과 그 변동에 대해서는 연방카르텔청에 의해 사후규제를 받으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심사에 맡겨져 있다.

제 1 절 개 요

1998년 제정된 에너지산업법의 새로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규제철폐, 국가적인 감독의 최소화라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여전히 에너지공급기업들의 강한 지위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라는 이유로 연방전기요금규정(Bundestarifordnung Elektrizität)에 따른 요금감독을 포기하지 못했다. 또한 2005년 에너지산업법에서도 이는 계속 적용되었다.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에 비로소 효력을 상실했다. 이 규정은 전력공급기업들의 요금이 어떤 요건에 일치해야 하고, 특히 원가지침의 원칙을 강조했다. 원가에 기준한 전기요금은 에너지절약, 자원보전, 환경보호에 제공되어야 했다. 전기요금감독은 독일 연방 각 주의 관할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요금의 허가를 위해서는 비용 및 수익상황이 중요했다. 전기요금이 전기요금감독의 허가에 달려있는 한, 카르텔감독은 제외되었다.⁸⁷⁾ 이러한 점에서 카르텔법은 요금규제에 대해 보조적이었다.

정액요금수요자에 대한 가스요금은 오래전부터 통제에서 해제되었다. 이 요금의 구조는 요금 동향을 자유롭게 맡겨둔 연방가스요금규정(Bundestarifordnung Gas)에 따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실무상 거의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가스공급이 처음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게 특

87) Danner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79. Erg.-Lfg. 2013), Einf. Rn. 83.

별수요자계약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⁸⁸⁾ 연방가스요금규정은 1998년 4월 에너지산업법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법률에 의해 폐기되면서, 현재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에서 망요금은 규제를 받고 있다.

오늘날 독일 전기·가스요금은 이에 상응하는 망요금규제, 카르텔법 그리고 사법상의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법상 형평성 통제(Billigkeitskontrolle, 민법 제315조 제3항)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카르텔법상 요금남용감독에 의해 전기·가스공급의 요금은 사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가스요금의 통제는 경쟁상 이루어진 요금형성을 위해 긴장관계에 있다. 목표한 시장성과의 정정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절차에 반하여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진입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⁸⁹⁾ 그리하여 일방적인 공급결정권이 있는 경우에 요금인상은 민법상 형평성 통제를 받는지,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⁹⁰⁾를 판단하기 위해 점점 더 판례의 과제가 커지고 있다. 요금신축조항(Preisgleitklauseln)⁹¹⁾의 형평성 통제는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괴리된 결과를 가져왔고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켰다.⁹²⁾ 무엇보다도 공급기업의 독점지위와 시장지배력에 에너지시장의 민영화 이래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계속해서 공급계약 조건의 적절성의 심사, 특히 요금조정의 형평성 심사를 인정하고 있다.⁹³⁾

88) Danner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79. Erg.-Lfg. 2013), Einf. Rn. 85.

89)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5.

90)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적인 판례로는 BGH, Urteil vom 13. 6. 2007, VIII ZR 36/06, Tz. 13, 29 *et seq.*

91) 요금신축조항 또는 *escalator clause*는 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생산비용의 상승 시 목적물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하나의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기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목적물의 생산을 위한 비용이 심각하게 동요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합의되곤 한다, <http://de.wikipedia.org/wiki/Preisgleitklausel> (최근 접속일: 2014년 11월 23일).

92) Danner, *op. cit.*, Einf. Rn. 84.

93) Völzmann-Stickelbrock in jurisPK-BGB (2013), § 315 Rn. 109.

제 2 절 전기 · 가스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1. 개 관

전기 및 가스의 기본공급명령에서 고객은 가정용 고객과 대체공급의 범위에서 망소비자를 말하며, 기본공급자는 망영역에서 전기 및 가스의 기본공급을 실행하는 전기 및 가스공급기업을 말한다. 오늘날 독일에서 전기 · 가스의 최종소비자는 업계의 전문용어상 산업용 고객인 등록된 공급계측(Leistungsmessung)에 의해 공급을 받는 고객(RLM-Kunden)과 가정용 고객 또는 공급계측에 의하지 않는 고객(nicht leistungsgemessene Kunden)인 이른바 표준부하프로필(Standardlastprofil)⁹⁴⁾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SLM-Kunden)가 있다.⁹⁵⁾

2007년 말 개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소비자들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이러한 실상은 지난 수년 동안 강하게 영향을 미쳐, 에너지공급자들은 그들의 시장을 당시에 유효한 카르텔법과의 조화 속에서 서로 차단된 채로 유지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분명하게 무조건적으로 에너지공급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느꼈다.⁹⁶⁾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원인을 물어볼 겨를도 없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에너지요금이 사실상 단계적으로 급상승함으로써 인하여 더욱 심해졌다.⁹⁷⁾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경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에서는 에너지요금에 대한 주제를 집

94) 부하프로필(last profil; load profile)은 에너지공급 또는 전력관리에서 일정한 시기에 전력공급의 시간적 경과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http://en.wikipedia.org/wiki/Load_profile(최근 접속일: 2014년 10월 11일).

95) Köber in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2014), § 29 GWB Rn. 37.

96) Koleva, Die Preismissbrauchskontrolle nach § 29 GWB (2013), S. 27.

97)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에너지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은 두 배로 증가했다, Koleva, *op. cit.*, Fn. 3.

중적으로 다루었고, 에너지공급자들의 사상 최고치 수익에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산업고객들에게도 장단기 경쟁력의 저하로 높은 비용부담과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위협이 되었다.

전기 및 가스 수요자 및 소비자에 대해 2011년부터 새로워진 점은 기본공급 또는 특별고객계약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 요금산정이 단순화 되고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⁹⁸⁾ 최종소비자의 에너지공급 요금계산서에는 해지기한, 망사업자 코드번호, 33자리 계수 표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⁹⁹⁾ 또한 공급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월별, 4분기별, 반기별 결산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연방망규제청은 망소비자의 요금계산서에 담을 최소내용을 정하여야 한다.¹⁰⁰⁾ 덧붙여 2012년 2월 4일 이래로 망소비자에게 공급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기간이 적용된다. 이때 공급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3주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망소비자에게 변경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¹⁰¹⁾ 수요자 및 소비자에 의한 공급자 변경을 위해 공급자변경절차(예를 들어, GPKE, GeLiGas)와 기업의 IT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¹⁰²⁾

2. 약관규제의 적용

전기 및 가스요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가정용 고객과 여러 반대론자들을 위해서 민법 제315조에 근거한 비형평성의 비난, 요금할인, 단지 일정한 유보 하에 인상액의 지급 등을 통해 독일 전역에서는 민사소송이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때 공급자들은

98) Theobald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 Rn. 134.

99) *Ibid.*, Rn. 135.

100) *Ibid.*, Rn. 136.

101) *Ibid.*, Rn. 137.

102) *Ibid.* Rn. 138.

고객들이 줄인 결산금액의 사후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비자들은 상승한 총요금 또는 요금인상은 민법 제315조에 의한 공평한 재량에 반하고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다.¹⁰³⁾

개인고객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민사법에 의하며, 특히 약관규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민법 제307조의 약관내용통제(Inhaltskontrolle)와 제315조의 형평성 통제가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민법상 형평성 통제, 민법 제138조에 의한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무효, 민법 제305조 이하 약관규제는 카르텔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금남용통제(Preismissbrauchskontroll)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배제된다. 하지만, 형평성 통제에 관한 민법 제315조 제3항은 요금인상 시 인상액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명시적으로 합의된 최초 요금에 대해 이러한 통제가 준용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의 독점적 지위에서 규제흡결로 인하여 불가능하다.¹⁰⁴⁾

지금까지 민법 제308조 및 제309조의 적용은 민법 제31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진정한 특별고객에 대한 공급(Sonderkundenversorgung)의 경우에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가 정형적으로 전통적인 정액고객그룹(Tarifkundengruppe)에 속하는 새로운 특별고객 또는 사적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약관규제에 의한 소비자보호 취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⁰⁵⁾

3. 보편적인 공급조건

보장급부(Gewährleistung)의 관점에서 요금남용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에너지공급 영역에서 국가적인 보장

103) 예를 들어, BGH, Urteil vom 19. 11. 2008, VIII ZR 138/07.

104) Körber in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2014), § 29 GWB Rn. 16.

105) Theobald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 Rn. 127 Fn. 153.

급부의 책임은 특히, 사회국가적인 요청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요금수준의 규제적 보장을 정하게 한다. 보편적인 공급(Allgemeine Versorgung)의 법적 개념은 에너지산업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편적 공급은 수요자 또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 및 가스공급의 의미와 전기 및 가스산업상 서비스제공과 함께 기본공급의 보장에 대한 청구는 에너지산업법상 연결 및 공급의무에 반영되어 있다.¹⁰⁶⁾ 만약, 어떤 수요자가 요금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저전압영역을 벗어난 공급과 함께 어떤 연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결 및 공급의무에 따른 계약체결의무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고객은 사적자치와 사법상의 처리원칙에 따라 계약방식을 협의해야 하는 특별수요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고객부류에서 카르텔법 제19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및 같은 법 제20조의 차별금지 규정은 기업가적 자유재량의 법적 한계를 두고 있다.¹⁰⁷⁾

보편적인 공급에 대한 구체화된 규정은 전기 및 가스의 기본공급명령에서 담고 있으며, 일반가정¹⁰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상 이 명령이 적용된다. 전기·가스공급에 이러한 명령이 적용되는 한, 보충적인 공급조건에서는 이들 개별적인 규정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기본공급자에게 형성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어, 명시적으로 다른 것을 규정하거나 보충적인 조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계약이 형성될 수

106) Theobald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 Rn. 132.

107) *Ibid.*

108) 에너지산업법 제3조 22호에 의한 가정용고객(Haushaltskunden)이란 가정에서의 자가소비를 위해서 또는 직업상, 농업상, 영업상의 목적으로 연간 소비가 10,000 킬로와트시(Kwh)를 넘지 않으면서 자가소비를 위해 에너지를 구매하는 망소비자(Netzverbraucher)를 말한다. 에너지산업법 제3조 25호에 따르면, 망소비자란 자가소비를 위해 에너지를 구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있다.¹⁰⁹⁾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수요자(Sonderabnehmer)에 대한 공급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에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거래조건에 의한 법률행위상 채권관계의 형성에 관한 민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특별수요자는 공급기업에 의해 일반적인 요금이 아닌 특별한 조건에서 공급되는 공공재의 구매자를 말한다.¹¹⁰⁾ 이러한 특별수요자와의 계약은 기업과 같은 대형 고객¹¹¹⁾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거래에서도 발생한다. 경제활동에서 전기·가스공급계약은 경제활동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제 3 절 전기·가스요금의 민법상 규제

1. 개 관

모든 요금의 변경은 유효한 법규정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전기 및 가스의 기본공급명령은 가정용 고객을 기본공급 및 대체공급에 있는 정액요금고객과 기본공급에서 벗어난 특별고객으로 구별하고 있다. 기본공급에서 가정용 고객은 기본공급자에 의해 전기 및 가스를 공급받는 자이다. 여기에서 기본공급자는 대부분의 가정용 고객에 대한 공급을 보편적인 공급의 망영역에서 실행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기업, 즉 시영기업(Stadtwerke)들이다. 기본공급에서 벗어난 가정용 고객은 특별계약고객에 속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기본공급자로서 다른 서비스제공자로 변경했거나, 기본공급자에게서 특별한 조건 및 요금으로 공급을 받는 자이다.

109) Schmidt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2011), Teil 4 (1) Rn. 1.

110) Ulmer/Schäfer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2011), Teil 1 § 310 BGB Rn. 100.

111) 에너지산업법 제3조 24호에 의한 고객(Kunden)이란 에너지를 구매하는 도매상, 망소비자, 기업을 말한다.

기본공급에서 가정용 고객이 자신의 전기 및 가스공급자의 요금변경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경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당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급자가 이러한 증명을 제시했다면, 인상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밖에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본공급에서 계약은 한 달의 기한을 두고 해당 월말에 해지를 한다. 인상된 요금의 고지는 인상되기 최소한 6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공급요율의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주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해지를 한 후 1개월 내에 새로운 계약체결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인상된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특히, 규범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2004년 이래로 민법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평성 통제 방법이 강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기 및 가스영역에서 우선 현재 중요한 민법상의 개입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카르텔법상의 근거규정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기로 한다.

2. 요금조정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내용상 계약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보다 약자인 시장참여자가 재화 및 용역제공자의 경제적 지적 우월함에 완전히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약형성의 자유가 법률상 금지 또는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한 한계에 부딪힌다면,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른 보호규정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약관은 다른 계약당사자를 권리형성에서 배제하고 복잡한 계약 작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경제적인 힘이라는 것은 비용 및 요금 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법관의 법형성(Rechtsfortbildung)을 통해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노력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입법자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약관의 내용통제를 민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07조 이하의 전체적인 목적은 계약당사자를 부적절하게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약관의 사용자는 내용통제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계약형성에 있어 그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요금조정조항은 처음부터 거의 합의된 관련요금이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계약기간의 경과 시 변경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여기에는 급부유보조항 또는 비용요소조항, 지수조항 또는 긴장조항 등이 있다.¹¹²⁾ 요금조정조항이 민법 제307조와 충돌하거나, 이러한 충돌이 요금조정으로 동반된 해지권에 의해 배상이 될 수 없거나, 해당 조항이 다른 이유로 인해 무효일 경우, 어떻게 계약관계를 변함없이 다루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¹¹³⁾ 하지만, 요금조정조항에서 민법 제307조 제3항에 따른 약관규제상 내용통제에서 벗어난 직접적인 요금합의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요금조정조항은 요금의 부수적 합의로써 민법 제307조 이하에 따른 완전한 내용통제를 받는다.¹¹⁴⁾ 원칙적으로 민법 제306조 제2항에 따르면, 무효인 약관의 삭제 시 나타난 불비는 법률규정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전기 및 가스의 기본공급명령은 법률규정으로써 특별고객과의 계약에 대해 하나의 표준이 되지만, 단지 기본공급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¹¹⁵⁾

특별계약고객에 대한 요금조정을 위해서도 유효한 요금조정조항의 형식에서 계약상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특별계약에 있는 요금조정

112) Grün/Ostendorf, BB 2014, 259.

113)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352.

114) Grün/Ostendorf, BB 2014, 259 (260).

115) *Ibid.*

조항도 민법 제307조에 따른 내용통제를 받게 된다. 특별계약고객은 최소한 요금조정의 요건 및 범위를 추론해 보아야 하며, 요금조정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종종 공급자는 요금조항을 사전에 작성해 놓고, 요금을 완전히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신들을 위해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0년 3월의 판례에서 가스의 특별고객계약 시 가스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오로지 산업용 가스오일(Heizöl Extra Leicht: HEL)에 대한 요금의 동향에 연계한 요금조정조항은 고객에게 부적절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요금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¹¹⁶⁾ 다시 말하자면, 해당 요금산정조항은 민법 제307조 제1항 1호에 따라 무효이며, 이 조항을 사용한 공급기업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없다.¹¹⁷⁾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계약관계 시 이러한 조항에 미지급 요금이 제공된 급부에 대한 각 시장가격과 일치함을 보장함이 규정되어 있고 적절한 경우,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위해 유효한 경쟁의 흠결로 여전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스요금이 여러 가지로 수평적으로 산업용 가스오일의 요금을 위해 동요하는 것은 시장영향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가스요금의 석유가격에의 연동은 이미 굳어져 있는 실무상황에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비용 상승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가스공급자의 인정될 만한 이익은 요금조정조항의 효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비용요소조항으로서 유효여서는 안 된다.¹¹⁸⁾ 이러한 점에서 고객의 불이익은 비교 가능한 판결에 기대어 요금조정조항이 구체적인 비용 상승의 고려를 넘어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능성을 설정했다는 것에 기인한다.

116) BGH, Urteil vom 24. 3. 2010, VIII ZR 304/08, Tz. 37 *et seq.*, 43 *et seq.*; BGH, Urteil vom 24. 3. 2010, VIII ZR 178/08, Tz. 30 *et seq.*, 35 *et seq.*

117) de Wyl/Soetebeer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1 Rn. 220.

118) *Ibid.*

다만, 최근 판례에서 전력량요금이 특별한 시간대에 가스공급을 위해 오직 계약상 정의된 난방용 석유의 요금동향에 따라 변경된다는 가스특별계약상 요금조정조항은 기업간 거래에서 민법상 내용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¹¹⁹⁾ 여기서는 요금조정조항에 의한 요금인상 시 소비자가 기업보다 더 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3. 형평성 통제

최초 요금 또는 요금인상 등 일방적으로 정해졌는지 또는 합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공급자가 유효한 요금조정조항에 의해 요금을 인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315조에 따른 이른바 형평성 통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은 사법상 통제될 수 있다. 요금인상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인지는 실제로 개별 기업의 영업비용산정에 대한 심사에 근거해서 확정될 수 있다.

독일의 판례도 법적 또는 사실상 독점지위에 있는 공급기업에 민법 제315조에서 의미하는 일방적인 급부지정이 존재함을 계속해서 긍정하고 있다.¹²⁰⁾ 왜냐하면 요금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개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 및 가스에 대한 기본공급명령에서도 일방적인 급부지정권의 의미에서 요금인상권한으로 해석되는¹²¹⁾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¹²²⁾ 다만, 독일 판례상 본질적인 의미에서 형평성 심사가 중요하더라도, 2007년 말부터 효력을 갖고 있는 카르텔법 제29조

119) BGH, Urteil vom 14. 5. 2014, VIII ZR 114/13, Tz. 33, 41, 45.

120) Völzmann-Stickelbrock in jurisPK-BGB (2013), § 315 Rn. 53, 108. 예를 들어 BGH, Urteil vom 21. 9. 2005, VIII ZR 7/05, Tz. 22; BGH, Urteil vom 5. 7. 2005, X ZR 99/04, Tz. 11.

121) BGH, Urteil vom 15. 7. 2009, VIII ZR 225/07, Tz. 23; BGH, Urteil vom 19. 11. 2008, VIII ZR 138/07, Tz. 16.

122) Völzmann-Stickelbrock in jurisPK-BGB (2013), § 315 Rn. 112.

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카르텔법상 남용규정의 적용 시 민법 제315조에 따른 심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¹²³⁾

다른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형평성 심사를 제한하고 있다.¹²⁴⁾ 즉, 공급자의 일반적인 요금이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상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요금은 민법 제315조의 적절한 적용으로 포괄적인 재판상 형평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¹²⁵⁾ 그리고 재판상 심사 시 공급계약에서 합의된 최초 요금은 고려되지 않으며, 형평성 심사는 전체 요금이 아닌 각각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만 관련하고 있다.¹²⁶⁾ 따라서 계약 시 요금에 대한 합의의 명제와 이후 인상된 요금에 대한 인수의 명제로 구분하여 논한 것이다.¹²⁷⁾ 공급자가 인상된 관련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제 4 절 전기·가스요금의 경쟁법상 규제

1. 개 관

독일의 정치적 여론에서는 연방카르텔청이 남용감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에너지요금의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연방카르텔청에게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연방카르텔청의 처분은 2006년 전 에너지 영역의 남용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많은 부분이 변했다. 사실 1998년 이후 특히, 카르텔법 제19조 제4항 2호에 근거한 전기·

123)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82.

124) BGH, Urteil vom 19. 11. 2008, VIII ZR 138/07.

125) *Ibid.*, Tz. 17 *et seq.*, 22 *et seq.*

126) *Ibid.*, Tz. 26, 30, 31, 36. 이와 더불어 일방적인 요금인상의 재판상 형평성 통제 시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유지에서 공급자의 이익은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ibid.*, Tz. 46 *et seq.*

127) Markert, *Sonderzivilrecht für Energieversorger contra legem?*, in: *Festschrift für Franz Jürgen Säcker zum 70. Geburtstag* (2011), S. 845 (847).

가스공급자의 판매가격에 대한 심사절차가 거의 개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공급기업이 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의 최초 의심의 근거를 위한 증거가 연방카르텔청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있다.¹²⁸⁾

에너지규제의 논리와 정당성은 수정이 필요한 에너지공급망의 자연독점에 있지만,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의 실현은 일반적인 카르텔법의 특징이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과 개별적인 행동의 합리성에 의해 특징 지워진 시장참여자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시장에서는 규제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개별적인 경우에 사적 자치의 한계가 두드러진다.¹²⁹⁾ 이에 걸맞게 카르텔법에서는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 항목별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남용감독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경쟁을 강구하는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위한 사전개입의 여지가 큰 에너지감독은 전형적으로 카르텔법상 남용감독을 능가한다.¹³⁰⁾

기업에 대한 남용감독은 규범적으로 카르텔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수취인 성질(Adressateneigenschaft)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자 없이 또는 본질적인 경쟁이 없는 것에 내맡겨져 있어야만 한다¹³¹⁾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카르텔법 제19조 제3항의 추정과 카르텔법 제19조 제2항 2호에 따른 우월적인 시장지위가 덧붙여진다.¹³²⁾ 어떤 기업이 이러한 규정에서 의미하는 시장지배적인지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시장의 획정(Abgrenzung des relevanten Marktes)이 필수적이다.

128) Koleva, Die Preismissbrauchskontrolle nach § 29 GWB (2012), S. 28.

129) Ludwigs in Baur/Salje/Schmidt-Preuß,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2011), Kap. 38 Rn. 6.

130) *Ibid.*, Rn. 8.

131) Klaue/Schwintowski, BB-Special 2010 Nr. 2, S. 4.

132) *Ibid.*

전기·가스영역에서 요금납용통제(Preismissbrauchskontrolle)에 관한 특별규제(Spezialregelung)는 2007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에너지공급 및 식품업에서 요금납용의 대응을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s Preismissbrauchs im Bereich der Energieversorgung und des Lebensmittelhandels)에 의해 카르텔법 제29조가 신설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카르텔법 제19조에서와 같이 수취인 성질을 요건으로 전기·가스시장에서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규제하고, 원가 또는 비용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¹³³⁾ 따라서 이전까지는 전기·가스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에너지산업법에서 망영역에 대한 특별규제 측면에서 현재 카르텔법 제29조는 공급 및 유통 망시장(die dem Netz vor- und nachgelagerten Märkte)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¹³⁴⁾ 무엇보다도 요금감독은 에너지감독기관에서 연방카르텔청으로 이관하였고, 규제기술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요금의 사전 허가를 대신해 카르텔법상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기 및 가스공급 영역에 대한 요금감독이 연방카르텔청에게 전부 또는 정액요금수요자나 특별요금수요자에 대한 차별 없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 영역에서 요금감독의 통합이 이루어졌다.¹³⁵⁾

2. 카르텔법 제29조의 인적 적용범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자로서 기업, 특히 단독 또는 다른 공급기업과 공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공급기업 또는 비교가능한 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 불리한 요금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요

133) 이봉의, “독과점시장과 착취납용의 규제”, 경쟁법연구 제22권(2010), 132면.

134) Körber in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2014), § 29 GWB Rn. 14, 37.

135) Schiller,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und die Sicherstellung von Anschluss und Versorgung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2012), S. 358.

구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용을 넘어선 요금을 청구하는 등 그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에너지산업에서 남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카르텔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정한 남용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¹³⁶⁾ 구성요건상 포함된 에너지공급영역 내에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남용에 대한 특별한 구성요건은 에너지산업법에 의한 망규제보다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이 발전업자 또는 중개업자로서 에너지를 판매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망소비자공급의 전체 영역 및 에너지공급의 전체 영역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¹³⁷⁾ 따라서 가정용 요금 같은 법 제29에 의한 특별한 남용감독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역에서 요금의 남용적인 형성은 연방카르텔청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카르텔법 제19조 제2항의 시장지배력 척도의 적용 아래에서 전기에 대한 최초 판매시장을 위해 과점적 시장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발전량의 80% 이상은 E.ON, RWE, Vattenfall Europe, EnBW의 4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E.ON과 RWE에 복점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전기의 산업용 고객인 등록된 공급계측(Leistungsmessung)에 의해 공급을 받는 고객(RLM-Kunden)의 공급을 위한 유통시장의 시장구조도 공급시장 단계에 의해 정해지며, 전체적으로 E.ON과 RWE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¹³⁸⁾ 그리고 특별 계약으로 보통 가정용 전기고객(SLP-Kunden)의 공급을 위한 유통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스시장은 현재 수입 및 발전단계와 3부류의 분배단계가 있고, 3부류의 분배단계에서는 다시금 망소비자단계가 중요하여 총 4가지 시장 단계를 이루고 있다.¹³⁹⁾ 연방카르텔청은 2012년 처음으로 수입 및 발

136) Schiller,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und die Sicherstellung von Anschluss und Versorgung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2012), S. 360.

137) *Ibid.*

138)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31.

139) Körber in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2014), § 29 GWB Rn. 55.

전단계에서 국내 및 해외 생산자에 의한 고압 및 저압가스의 개발, 공급, 판매를 위한 시장을 확정했었고, 그 외에 초지역적 원격가스단계를 연방 전체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다.¹⁴⁰⁾ 국내 가스공급의 잉여생산망에 따라 현재 망시장 내에 모든 단계에서 가스공급기업에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과거 연방카르텔청은 E.ON, WINGAS, VNG의 과점추정을 판단한 바가 있었으나, 기업결합에 의해 조정개연성이 증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⁴¹⁾

3. 카르텔법 제29조의 구성요건

카르텔법 제29조 1문에서 다른 공급기업과의 비교와 수익상한을 위한 개념은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무상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같은 조 1문 1호에서는 최종소비자요금의 통제가 중심에 있으며, 2호는 입법초안의 배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너무 높은 도매요금의 심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¹⁴²⁾ 카르텔법 제29조에서 요금과 거래조건의 개념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2호와 3호에서의 개념과 일치하며, 개별적으로 증명된 요금형성을 포함하거나 요금형성에 계측요금과 같은 민감한 요금을 포함한다.¹⁴³⁾ 이는 개별적인 요금형성요인과 마찬가지로 남용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정된 요금이 시장경쟁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면, 다수의 요금형성요인의 상승은 남용적으로 인상된 요금의 간접증거일 수 있다.

140) Becker/Blau, *op. cit.*, Rn. 35.

141) BKartA, Beschluss vom 31. 1. 2012, B-8 116/11, Tz. 165 „Gazprom/VNG“; Körber, *op. cit.*, Rn. 58 Fn. 163 재인용.

142) Dorß in Loewenheim/Meessen/Riesenkampff, Kartellrecht (2009), GWB § 29 Rn. 10.

143) Judith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79. Erg.-Lfg. 2013), Missbrausaufsicht in der Energiewirtschaft Rn. 73.

카르텔법 제29조 1문에서는 제재를 받게 되는 남용에 대해 2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중요한 시장에서 관련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지위의 남용이다. 여기 1호에 따라 카르텔청은 남용의심의 증거를 위해 비교시장개념(Vergleichsmarktkonzept)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른 공급기업을 판단기준으로써 관련시킬 수 있다.¹⁴⁴⁾ 하지만, 구별되는 시장 및 경제단계는 조사 시 서로 의미 있게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다른 기업의 가스요금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남용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의 요금이나 거래조건을 판매영역에 있는 다른 공급자의 행태와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⁴⁵⁾ 다른 한편, 착취남용의 심사 시에는 비교가능성이 확대된다.¹⁴⁶⁾

불리한 요금의 비교방법으로 비교시장개념 뿐만 아니라, 요금비교와 주요가산금, 객관적인 정당화가 있다.¹⁴⁷⁾ 경쟁적인 요금 또는 저렴한 공급자에 대한 비싼 공급기업의 요금차이는 요율비교와 수익비교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객관적인 정당화 가능성 즉, 불리한 요금 및 거래조건이 객관적을 정당화될 수 없다면, 남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구조적인 차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다른 기업에 대해 중요한 기준에도 제한되지 않는다.¹⁴⁸⁾ 객관적인 정당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익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때 잠재적으로 남용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의 상대방 시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¹⁴⁹⁾

144) Judith in Danner/Theobald, *Energierrecht* (Stand: 79. Erg.-Lfg. 2013), *Missbrausaufsicht in der Energiewirtschaft* Rn. 74; Dorß in Loewenheim/Meessen/Riesenkampff, *Kartellrecht* (2009), *GWB § 29* Rn. 11.

145) *Ibid.*

146) Judith, *op. cit.*, Rn. 75.

147)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40 *et seqq.*

148) Dorß in Loewenheim/Meessen/Riesenkampff, *Kartellrecht* (2009), *GWB § 29* Rn. 21, 22.

149) *Ibid.*, Rn. 23.

연방카르텔청은 카르텔법 제29조 1문 1호에 따른 비교시장의 고려를 위해 선택적으로 비용에 기초한 요금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¹⁵⁰⁾ 그래서 같은 규정 2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에너지공급기업이 비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넘어선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존재한다. 이 규정의 구성요건은 우선 비용 사이에 차이와 공급자가 산정할 수 있는 요금을 전제로 한다.¹⁵¹⁾ 하지만, 카르텔법 제 29조는 개별적인 요금의 구성요건에 준용되지는 않는다.¹⁵²⁾

2호 규정은 오직 요금과 관련하고 있으며, 거래조건과는 무관하나, 비용상 중요한 경우, 이 규정은 거래조건에 대해 의미가 있다.¹⁵³⁾ 판매수익의 심사를 통해 요금남용을 증명하는 가능성은 인정되고 있다.¹⁵⁴⁾ 요금과 비용 사이의 차액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공급자가 산정할 수 있는 요금에서 조사하고, 이어서 비용을 대조해야 한다.¹⁵⁵⁾ 요금과 비용의 높은 차이는 부적절한 요금과 비용의 관계에 대한 간접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적절성 심사 시 특별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그래서 요금과 비용의 높은 차이는 특별한 효율 증대로 소급하거나 유보된 투자를 정당화될 수 있다.

150) Judith in Danner/Theobald, *Energierecht* (Stand: 79. Erg.-Lfg. 2013), *Missbrausaufsicht in der Energiewirtschaft* Rn. 78.

151)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65.

152) Dorß, *op. cit.*, Rn. 17.

153) *Ibid.*, Rn. 28.

154) Becker/Blau, *op. cit.*, Rn. 66.

155) *Ibid.*, Rn. 69.

제 4 장 결 론

에너지공급에 관한 규제는 무엇보다도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규제 체계는 경쟁에 있으며, 공급의무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¹⁵⁶⁾ 요금규제는 필연적으로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다.¹⁵⁷⁾ 우선 이러한 요금규제는 독점적인 시장구조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계속해서 두둔할 수 있다. 또한 비싼 요금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른 저렴한 공급자의 요금수준으로 그의 요금을 인하하게 된 경우, 요금규제는 카르텔관청에 의해 국가적으로 규정된 요금카르텔에 거의 일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요금규제는 이미 결정된 시기와 시장지배적 기업의 뒤이은 행태에서 잠재적 시장참여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이들이 시장진입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행정청에 의한 특별 영역의 요금감독은 경쟁적인 요금형성을 갖춘 규제체계에 적절하지 않으며, 게다가 요금감독이 비용에 기초한 독점요금에 대해 행정적인 통제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경우에는 더욱 맞지 않다.

독임제 행정청에 의해 자연독점적인 전기·가스에 대한 요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에서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두어 요금결정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이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¹⁵⁸⁾ 그러나 이마저도 2009년 5월 27일에 폐지되었다. 앞으로는 전기·가스요금의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추세로 이어지겠지만, 지속적인 정부

156) Britz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2010), § 9 Rn. 1.

157) Becker/Blau in Schneider/Theobald, Recht der Energiewirtschaft (2013), § 12 Rn. 8.

158) 이와 함께 위원회 행정의 문제에 대해 이호영,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2009), 187~188면.

의 요금통제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사전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적어도 관할 행정청의 판단여지 또는 재량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여 수요자 또는 소비자 권리를 확대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원은 서로 대체적 보완적 관계 속에서 요금왜곡의 부작용이 복잡하게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독립된 망규제기관 또는 에너지통합규제기관에 의해 요금규제의 독립성, 자의적인 의사결정의 방지, 전문성, 정책의 일관성 등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통제로 인한 수익구조의 악화, 전기·가스사업자의 독과점시장에 안주 및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을 회피하는 경향은 앞으로 법제적인 뒷받침과 함께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적인 사업에 의한 일방적인 공급조건 및 전기·가스요금의 결정체계에서 수요자 또는 소비자의 권리보장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국적으로 사법심사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의미에서 민법상 형평성 통제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요금의 법정 통제를 위해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카르텔법상 남용규제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개별적인 집행가능성은 확고해야 한다. 민영화 이후라도 생존배려 차원에서 국가에게는 보장행정의 기능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경우이든 제한된 경쟁에서 요금규제는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공급경쟁은 망소유자 또는 망사업자로서 수직적으로 결합한 기업이 제3의 망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망접속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주체가 필요하다.¹⁵⁹⁾ 그러나 공급자의 요금에 대한 규제 대상의 확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받

159) Scholze, Die Stellung des Energievertragsrechts im Verhältnis zum allgemeinen Zivilrecht (2007), S. 209.

아들이기 어렵다. 전기·가스와 관련한 요금에 대한 허가는 망의 독점영역 즉, 망접속과 망연결에 대한 망요금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사전에 규제기관에 의해 허가되었다고 하여 카르텔법상 요금인상의 남용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¹⁶⁰⁾ 규제법상 공급의무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 요금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행위를 막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¹⁶¹⁾ 즉, 규제기관이 요금허가의 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숨어 있는 남용적인 행태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태는 기타 조치 또는 허가할 의무가 없는 조치 등과 결합해서 경쟁상 남용적인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⁶²⁾ 독일의 유인규제시스템에서도 망사업자 스스로 망요금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경쟁은 기업과 고객에게 특별한 판단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금규제와 요금경쟁은 서로 물과 불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¹⁶³⁾ 요금감독이 경쟁시장에서 그 유용함이 적은 경우, 시장 지배적 기업의 통제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지배자는 시장에서의 그의 지위와 이와 관련해 잘못 규율한 효과에서, 뚜렷해진 경쟁을 근거로 남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다면, 남용적인 요금 또

160) 같은 입장에 Kling,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2013), S. 68.

161) 김현수, “이윤압착의 규제 필요성과 위법성 판단기준”, 기업법연구 제25권 제2호(2011), 211면.

162) 여기에서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나 이지적인 할인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Kling, *op. cit.*, S. 68~69. 이윤압착은 수직적으로 결합된 독점기업이 공급시장과 유통시장 간의 가격 또는 요금 격차를 좁혀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책정하여 유통시장의 경쟁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ibid.*, S. 72 ff. 김현수, 위의 논문, 189면; 이봉의,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경쟁법연구 제22권(2010), 122면, 주) 5 비교.

163) Scholze, Die Stellung des Energievertragsrechts im Verhältnis zum allgemeinen Zivilrecht (2007), S. 209.

는 경쟁자의 부당한 방해는 카르텔감독기관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전기 및 가스산업에서 저항력이 있는 자연독점과 규제기관에 의한 지나친 요금통제 등은 시장장벽과 생산 및 분배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경쟁적인 요금의 형성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효과를 해쳐나가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는 망사업자의 경제적인 자기이익을 사용하고 시장의 힘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보이는 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절히 대체하게 된다.

특별계약고객과 전기 및 가스의 표준공급계약에서 일방적인 요금조정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요금의 재협상조항에 근거한 계약요금의 적절한 개별적인 새로운 협의는 대량 거래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와 관련한 지수의 모든 경우에 대해 자동적인 요금조정을 규정한 조항은 단지 상인 또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독일의 전기·가스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전기·가스요금의 남용을 통제하는 법제도를 소개하였고, 한국의 전기·가스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시장화를 추진하다 초입 단계에 멈춘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은 이미 경쟁도입에 대비하여 망접근 허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보편적 공급에 따라 전기·가스사업자는 그의 수요자 또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하며, 그 수요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전기·가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주창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전기·가스시장의 민영화 정책과 경쟁법 집행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전기·가스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경쟁도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 김성수, 개별행정법 - 협력적 법치주의와 행정법이론 -, 제2판, 법문사, 2004.
- 김향기, 행정법개론, 제7판, 삼영사, 2005.
- 김현수, “이윤압착의 규제 필요성과 위법성 판단기준”, 기업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9판, 삼영사, 2002.
- 신봉기,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 윤강욱, 망산업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의 전력산업규제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봉의,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2권, 한국경쟁법학회, 2010.
- 한건우, 현대행정법신론2, 세창출판사, 2014.
- _____, 행정법 (II), 제2판, 홍문사, 1996.

2. 국외 문헌

- Baur, Jürgen F./Salje, Peter/Schmidt-Preuß, Matthias *et al.*: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Ein Handbuch, Carl Heymanns, 2011.
- Buttermann_Hillebrand_Baten, Determinanten der Strom-und Gaspreisentwicklung in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Energiewirtschaft (ZfE) 2008, 187 *et seqq.*
- Danner, Wolfgang/Theobald, Christian *et al.*: Energierecht, 81. Ergänzungslief., C.H. Beck, 2014.
- European Commission, Energy 2020: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COM (2010) 639 final, 11. 2010.
- Fehling, Michael/Ruffert, Matthias: Regulierungsrecht, Mohr Siebeck, 2010.
- Grün, Anselm/Ostendorf, Patrick: Unwirksamkeit einer Vielzahl von Preisanpassungsklauseln auch in Energieversorgungsverträgen mit Industriekunden?, Betriebs-Berater (BB), 2014, 259 *et seqq.*
- Haucap, Justus/Coenen, Michael: Mehr Plan- als Marktwirtschaft in der energiepolitischen Strategie 2020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in: Joost, Detlev/Oetker, Hartmut/Paschke, Marian *et al.*: Festschrift für Franz Jürgen Säcker zum 70. Geburtstag, C.H. Beck, 2011, 721 *et seqq.*
- Herberger, Maximilian/Martinek, Michael/ Rüßmann, Helmut/Weth, Stephan *et al.*: juris Praxiskommentar BGB, Bd. 2.1 Schuldrecht (Teil 1: §§ 241 bis 432), 6. Aufl., Juris, 2013.
-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Band 2 GWB: Kommentar zum Deutschen Kartellrecht, 5. Aufl., C.H. Beck, 2014.

- Kling, Michael: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Entgeltbestimmung durch simulierten Wettbewerb und Missbrauchskontrolle nach Regulierungsrecht, Kartellrecht und Zivilrecht, Mohr Siebeck, 2013.
- Koleva, Raliza: Die Preismissbrauchskontrolle nach § 29 GWB, Nomos, 2013.
- Lismann, Christian: Einführung in das Regulierungsrecht der Netzwirtschaften am Beispiel der energiewirtschaftsrechtlichen Anreizregulierungsverordnung,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NVwZ) 2014, 691 *et seqq.*
- Markert, Kurt: Sonderzivilrecht für Energieversorger contra legem? - Kritische Anmerkungen zur neueren Rechtsprechung des VIII. Zivilsenats des BGH bei der Anwendung der §§ 307, 315 BGB auf Strom- und Gaspreise, in: Joost, Detlev/Oetker, Hartmut/Paschke, Marian *et al.*: Festschrift für Franz Jürgen Säcker zum 70. Geburtstag, C.H. Beck, 2011, 845 *et seqq.*
- Petersen, Malte/Thomas, Henning: Energy Law in Germany, Wolters Kluwer, 2011.
- Schiller, Marcus: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und die Sicherstellung von Anschluss und Versorgung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Nomos, 2012.
- Schneider, Jens-Peter/Theobald, Christian *et al.*: Recht der Energiewirtschaft: Praxishandbuch, 4. Aufl., C.H. Beck, 2013.
- Scholze, Gregor: Die Stellung des Energievertragsrechts im Verhältnis zum allgemeinen Zivilrecht: Zur Bestimmung gegenseitiger Rechte

참 고 문 헌

und Pflichten zwischen Kunden, Lieferanten und Netzbetreibern.
Ein Vorschlag der Neugestaltung, Nomos, 2007.

Ulmer, Peter/Brandner, Hans Erich/Hensen, Horst-Diether *et al.*: AGB-
Recht, 11. Aufl., Dr. Otto Schmidt, 2011.